

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10. 23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정환 의원 등 5명
- 발의일자: 2025. 10. 2.(목)
- 회부일자: 2025. 10. 10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10. 23.)

2. 제정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, 제23조, 제 27조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9조의2
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으로 인해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둔 채 고립 생활을 하여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본인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, 화재 위험, 악취 등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가구를 청소하고,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행정적·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 관련법령 등에 부합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